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6일(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73호)
- 나. 회부일자: 2021. 8. 26.
- 다. 상정일자: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 등의 감면 적용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조문 구분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물건	문화재	미분양 주택	도시정비 사업	전통 시장	등록 한옥	사회적협 동 조합	도시자연 공원구역
감면 세목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면허세	재산세

- 「영업금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 세율 감면
- 고급오락장 적용 세율

대상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토 지		1천분의 40	1천분의 4	
건 축 물		1천분의 40	1천분의 2.5	

- 감면대상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벌칙)조제7호에 따라 벌금에 처하거나, 제83조(과태료)제2항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금지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